



배포 일시	2022. 11. 8.(화)		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	책임자	과 장 강태석 (044-201-3364)
		담당자	사무관 오윤택 (044-201-3366) 사무관 박승용 (044-201-4899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KBS, 11.8) >

◆ 지긋지긋한 층간소음... "소음 매트는 실효성 없어"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기축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담은 「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」(22.8.18.)을 발표하였으며, 기축주택에 대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매트 비용을 용자 지원하는 ‘층간소음 성능보장 사업’을 추진 중입니다.
-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대부분 중량충격음인 점을 고려하여, 소음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충격음 저감 성능이 확보된 제품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.
- 또한 신청자들의 대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자 이율을 저리로 추진 중이며,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한편, 입주민들의 자율해결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갈등의 중재·조정, 민원 상담,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인 ‘층간소음 관리위원회’를 의무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‘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가이드북*’을 제작 중에 있으며,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자료제공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.

* 층간소음의 발생 유형 및 원인,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역할, 층간소음 분쟁조정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

-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 하도록 하는 사후확인제를 시행(‘22.8.4.)하였으며,

- 층간소음 우수기업 혜택 확대, 사후확인 결과 공개, 시공단계 관리 강화 등 대책에서 마련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,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